

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(임원 및 위원) 후보자 등록 공고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13 및 「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」 제 21조에 의하여 제1대 주민대표회의 임기 만료(8월2일) 예정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대 주민대표회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임기

가. 구성원수 : 5인이상 25인 이하

- 임원(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이사 1인 이상, 감사 1인이상 3인이하), 위원 20인이하

※ 원활한 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등 임원과 위원 전원이 하나의 팀 단위 후보자로 등록

나. 임기 : 선출일로부터 3년

2. 후보자 등록기간 및 방법

가. 등록기간 : 2024.05.03.(금) ~ 2024.05.16(목)

※ 평일 등록 09시 ~ 18시(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)

나.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

※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으며, 방문 접수할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접수장소

-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도시정비2팀

※ 전화번호 : 031-250-3932, 3963, 3903

3. 자격요건

가. 임원(위원장·부위원장·이사·감사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

① 선출일 직전 3년 내 복합지구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(다만, 거주 목적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로 본다)

② 선출일 기준 현재 복합지구 안에서 3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

나. 임원 및 위원은 선출일 기준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며, 공유자인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.

다. 임원 및 위원은 다음 결격사유*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한다.

[임원 및 위원의 결격사유]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정비사업 관련 단체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
7.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대표회의,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 등)의 조합,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·설계자·정비업체 등 관련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

4. 제출서류

가. 후보자 접수시

- 1) 주민대표회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(통합1부, 임원 자격요건 증명서류 각 1부 포함)
 - ① 등기부등본 - ②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
 -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거주로 인정하는 영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)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신청서(개인별1부, 신분증 사본 첨부)
- 3) 주민대표회의 후보자 추천서(통합1부,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)
 - ※ 후보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20인의 추천 필요(중복추천 불가)
- 4) 주민대표회의 임원,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(개인별1부)
- 5) 후보자 소견서(통합1부, 생략가능)

나. 후보자 확정공고 전

- 1) 주민협의체 운영규정(통합1식)
- 2)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예산서(통합1부)
- 3) 후보자 공고시 사용될 홍보물(통합1부, 선택가능)

5. 기타 안내사항

- 가. 후보자 확정공고일, 선거운동 기간 등의 세부일정은 후보자 접수 후 구성되는 선출업무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나. 본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